



大清湖 水質 保護 區域內 골프장 建設에 對한  
調査計劃書

1991. 12.

大清湖 水質 保護 調査  
特別委員會

## 目 次

1. 調査의 目的 .....	2
2. 調査의 期間 .....	3
3. 調査 實施 對策 .....	3
4. 調査班의 編成 .....	4
5. 調査 日程 및 調査 場所 .....	4
6. 調査 要 領 .....	5

大清湖 水質 保護 區域內 골프장 建設에 대한

## 調　查　計　劃　書

大清湖水質保護調查  
特別委員會

### 1. 調査의 目的

- 大田·忠南 및 全北 一圓의 唯一한 食水源인 大清湖가
  - 忠北道의 下水處理率 5.3%(1日)에 불과하고
  - 영동의 粪尿 處理場 容量過多
  - 上流地域인 忠北 옥천, 영동, 심천등지의 生活廢水等에 의하여 富營養化 現象이 날이 갈수록 深化되고 있어 3등급 食水로 轉落할 危機에直面해 있음에도
- 忠北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비아골) 환산일대 60여만평에 골프장을 建設코자 하는 계광건설(대표이사 육동진)이 忠北道에 事業承認申請을 提出(91. 1. 4)한 바
  - 忠北道에서는 環境處의 環境影響評價를 土臺로 事業을 承認할 計劃으로 있으며
  - 環境廳 또한 環境影響評價를 肯定的으로 檢討하고 있는 實情으로

- 同 골프장 豫定地域은 大清湖와 直線거리 3Km, 道路거리 5Km, 河川 流入 經路 5Km밖에 되지 않는 “上水源 特別保護 區域”이며 “水質 保存 特別 對策 地區”로써 골프장事業 承認이 된다면
  - 建設工事時 河川을 通한 多量의 土砂流入에 의한 水質污染
  - 施設完了後 골프장 잔디 保護를 為하여 撒布되는 有毒性 農藥(플리옥신 D등)등이 빗물에 셋겨 大清湖의 水質을 더욱 크게 汚染시킬 것으로 憂慮되는 바
- 골프장 建設豫定地 및 其他 汚染現場 現地 確認을 通하여 問題點을 正確히 把握하고 地方自治法 第139條(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協力)에 依據 調查를 實施하고 關聯 地方自治團體와 中部圈의 唯一한 食水源인 大清湖 水質 保護에 대한 共同對策을 마련코자 함.

## 2. 調査의 期間

1992. 1. 10 ~ 1992. 1. 20 (11日間)

## 3 調査 實施 對象

- 현지 확인
    - 옥천군 군북면 골프장 建設豫定地
    - 其他 大清湖 周邊 水質 汚染 憂慮地域
- \* 골프장 建設과 關聯한 許可機關의 意見聽取(忠淸北道)

#### 4. 調査班의 編成

- 調査委員長 : 金 善 奎
- 調査委員 : 金 成 九  
李 鍾 奎  
朴 炳 浩  
李 秉 奎  
金 石 種  
宋 錫 贊
- 補助職員 : 專門委員 金 鎭 鎬, 李 雨 錫  
職員 韓道洙, 吉光燮, 李明容  
速記士 2名

#### 5. 調査日程 및 調査 場所

日 時	調査對象	調査場所	備 考
92. 1. 10 (金) 10:00 ~			※忠清北道 訪問 關聯 件에 대한 意見聽取
92. 1. 11(土) 10:00 ~	골프장 建設 豫 定 地	現 場 確 認	
92. 1. 12(日) ~ 1. 20 까지	· 下水終末處理 場(영동) ·糞尿處理場 · 其他 水質 污染施設 및 憂慮 地域	現 場 確 認	

## 6. 調 査 要 領

### (1) 意見聽取(忠清北道)

- 골프장 建設 計劃에 따른 現況 및 意見聽取
  - 上水源 特別 保護 區域 및 水質 保存 特別 對策地域內 “國土 利用 管理 計劃” 變更 事項
  - 環境 影響 評價時 利害 關聯 住民의 同意 與否
  - 계광건설의 事業 承認 申請 經緯

### (2) 現地 確認(골프장 建設 豫定地外)

- 골프장 豫定地 隣近 住民 輿論 聽取
- 水質污染源의 問題點 把握과 分析
- 其他 水質污染(가두리養殖場, 糞尿 處理場, 下水處理施設等) 誘發 地域 및 施設의 問題點 把握

## 7. 其他事項(參考資料要請 • 忠清北道)

- 골프장 事業 承認 申請書 處理 經過
- 골프장 事業 承認 申請書 接受에 따른 忠北道의 處理方針
- 水質保存 特別 區域內 國土利用 管理 計劃 變更 關聯 書類
- 忠北道의 下水處理率 現況
- 忠北道의 糞尿 處理率 現況
- 大清湖 周邊 忠北道 管內 公害 排出 業所 現況
- 가두리 養殖場 許可 現況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内　務　委　員　會

## 目 次

1. 審査経過 .....	2
2. 提案 説明 要旨 .....	2
3. 専門委員検討 要旨 .....	3
4. 質疑 및 答辯要旨 .....	3
5. 討論要旨 .....	4
6. 修正案要旨 .....	4
7. 審査結果 .....	4
8. 小數意見의 要旨 .....	4
9. 其他 必要한 事項 .....	4

大田直轄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1年 12月 27日

內務委員會

###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1年 11月 20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附日字 : 1991年 11月 20日
- 다. 上程日字 :
  -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4次內務委員會(1991年 12月 14日) 上程, 審議保留
  -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6次內務委員會(1991年 12月 23日) 上程, 審議留保
  -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第7次內務委員會(1991年 12月 26日) 上程, 審議修正議決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한밭圖書館長)

- 가. 提案理由

圖書館振興法('91.3.8) 및 同法施行令('91.4.8)의 改正됨에 따라  
委任된 事項과 總事業費 25億원을 들여 '91. 7. 10에 着工된  
講堂, 세미나室, 展示室을 갖춘 1,005坪의 文化施設을 '92. 1. 1  
부터 部分 開館하여 市民의 藝術活動 및 公共集會場所로 提供  
하여 市民文化 享受權을 伸長하고자 함.

#### 나 . 主要骨子

- 施設目的에 公衆에의 情報提供을 통하여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고 藝術活動과 公共集會의 場所로 提供하여 便宜를 圖謀하고자 함 (條例 1條)
- 圖書館이 地域文化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業務를 提供함. (條例 第3條)

#### 3. 專門委員 檢討要旨 (專門委員 : 安鍾贊)

本 改正條例案은 한밭도서관이 共同圖書館으로써 이와 關聯한 圖書館法이 圖書館 振興法으로 改正('91.3.8)됨에 따라 圖書館이 地域의 中心機關으로 그 역할을 擔當하고 公衆에 대한 情報提供 및 文化, 教育센터로써의 機能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에 따라 關聯 施設을 擴張함에 따른 關係條例의 改正案이됨

#### 그 主要 内容은

첫째, 共同圖書館으로써 施設目的에 藝術活動의 舞臺 提供과 公共集會의 便益을 圖謀하는 内容을 追加 插入하는 案이 되겠음 (第1條)

둘째, 圖書館의 分掌業務로써 公衆에 必要한 情報 他 圖書館과의 資料交流, 文化活動을 위한 映畫, 演奏, 舞踊의 場所 提供 文化 및 產業展示會등 地域의 中心圖書館 役割을 하는 機能으로 補強하는 것임(第 3條)

#### 4.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5. 討論要旨 :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26日 内務委員長
- 나. 修 正 理 由 : 別添
- 다. 修正 主要骨子 : 別添

7.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8. 小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 대전직 할시 한밭도서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 1991. 12.26

제 출 자 : 내무위원장

### 1. 수정 이유

- 도서관진흥법('91.3.8) 및 동법시행령('91.4.8)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91.4.10 착공된 강당, 세미나실, 전시실을 갖춘 1,005평의 문화시설을 '92.1.1부터 부분개관하는 바, 이를 일반시민의 예술활동과 공공집회장소로 막연히 제공하기보다는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 제공 장으로 도서관의 근본 목적을 살리자는 수정안이 됨.

### 2. 주요골자

- 가. 제1조의 내용중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무대 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지방문화 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로 수정하였으며
- 나. 제3조 제5호의 내용을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으로 수정하였으며, 본조 제6호는 제5호 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음
- 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 한밭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案 제1조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무대 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로 한다
- 案 제3조 제5호중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주, 음악, 무용의 공연장소 제공”을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으로 한다
- 案 제3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 案 부칙중 “1992년 1월 1일”를 “공포한날”로 한다.

##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 (설치) -----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부대 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	제1조 (설치) ----- -----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
제3조 (업무) 1. ----- 2. ----- 3. ----- 4. ----- 5. 문화 활동을 위한 영화, 연주 음악, 무용의 공연장소 제공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 전시 7. -----	제3조 (업무) 1. ----- 2. ----- 3. ----- 4. ----- 5.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강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 6. (삭제) 7. 제6호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 案	42
番 號	

提出年月日 : 1991. 11. 20

提 出 者 : 大 田 直 轄 市 長

## 1. 提案理由

圖書館振興法('91. 3. 8.) 및 同法施行令('91. 4. 8.)이 改正됨에 따라 委任된 事項과 總事業費 25億원을 들여 '91. 4. 10.에 着工된 講堂, 세미나 室 · 展示室을 갖춘 1,005坪의 文化施設을 '92. 1. 1.부터 部分開館하여 市民의 藝術活動 및 公共集會 場所로 提供하여 市民 文化享受權을 伸張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가. 設置目的에 公衆에의 情報提供을 통하여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고 藝術活動과 公共集會의 場所로 提供하여 便宜를 圖謀코자 함. (條例 1條)

나. 圖書館이 地域文化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業務를 規定함. (條例 第3條)

### 3. 條例案 ( 별첨 )

#### 4. 參考事項

1. 圖書館振興法 拔萃案 1部.
2. 文化施設 追加插入
  - 가. 對象 : 講堂. 展示室. 세미나室
  - 나. 事由 : 新規建立
  - 다. 建立概要

名 稱	한 밭 圖 書 館 別 館 新 築
位 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區 文化洞 145-3番地 한밭圖書館內</li> </ul>
目 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民의 藝術活動 舞臺와 公共集會 場所 提供 ⇒ 文化 享受權 伸張</li> <li>◦ 情報提供을 통하여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 이바지 ⇒ 地域文化의 中心機關役割</li> </ul>
規 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延面積 3,325m<sup>2</sup> (地下1層 - 地上3層)</li> <li>◦ 講堂 . 展示室 . 세미나室 等</li> </ul>
工事期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 4. 10. ~ '92. 4月 豫定</li> </ul>
事 業 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億원</li> </ul>
運營計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期間 : 年中</li> <li>◦ 運營 : 市 直營</li> </ul>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설치)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무대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5.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 연주 · 음악 · 무용의 공연 장소 제공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7. 그 밖의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1조(설치) 도서 및 향토자료 기타 전적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대전직합시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 및 향토자료 전적류의 수집 및 정비 보관</li> <li>2. 도서 및 향토자료 전적류의 열람제공</li> <li>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li> <li>4.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제1조(설치)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무대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직합시한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p> <p>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li> <li>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li> <li>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li> <li>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li> <li>5.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주. 음악. 무용의 공연장소 제공</li> <li>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li> <li>7. 그밖의 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관 련 법령 발췌 서

도 서 관 진 흥 법	비 고
제3장 공공도서관	
제19조(설립) 국가, <u>지방자치단체</u>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u>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u>	
제20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li> <li>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li> <li>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li> <li>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li> <li>5. <u>감언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실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참례</u></li> <li>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li> <li>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li> <li>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li> </ol>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등) ①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u> <u>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u> <u>하여야 한다.</u>	